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5093119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지배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0.

## 주 문

1. 피고와 D과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의 1/5 상속지분에 관하여 2020. 9.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5,308,8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308,834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D과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의 1/5 상속지분에 관하여 2020. 9.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금 25,314,16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314,164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청구원인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 한다)은 D의 연대보증하에 F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는데, F 등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E은행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순차 양도하였다.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06556 양수금(시효연장)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19. D은 F의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40,320원 및 그 중 4,052,478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18. 확정되었다.

#### 나. D의 무자력 초래

1) D의 아버지 G는 1995. 12. 2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H, 자녀인 피고, D, I, J, K 등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건물은 미등기 상태)이 있었다. 이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H이 2017. 12. 9.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D, I, J(2018. 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L, 자녀인 M이 있었는데, L이 상속을 포기하여 M이 상속), K의 각 상속지분은 결국 각 1/5이 되었다.

2) 위 상속인들은 2020. 9. 1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D의 지분 1/5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1995. 1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11. 6. 접수 제49885호로 피고의 지분을 2/5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11. 6. 접수 제49886호로 피고의 지분을 2/5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D를 제외한 2020. 10. 10. 위 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N에게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등기소 2020. 11. 6. 접수 제498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위 1/5 상속지분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은 공동상속한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자신의 상속분을 전부 피고에게 양도하고 2020. 11. 6.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과 J이 2001. 6.부터 2017. 4.까지 D에게 21,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 사건 상속지분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도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채무자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는 자신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D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살펴본 피고와 D의 관계, 상속재산 분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의 재산 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 마.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 1) 원상회복의 방법

####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 2)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제3자에 양도되었고 그 대금이 150,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 역시 30,000,000원으로 추단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11,940,320원 및 그 중 4,052,478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계산 한 이자 13,368,514원의 합계 이 25,308,834원이므로 위

25,308,834원이 가액반환의 범위라고 할 것이다.

| 원금        | 시작일        | 종료일        | 이율(%) | 기간식            | 기간 이자      | 이자 누계      | 원리금 합계     |
|-----------|------------|------------|-------|----------------|------------|------------|------------|
| 4,052,478 | 2008.01.01 | 2021.09.29 | 24.00 | (13 + 272/365) | 13,368,514 | 13,368,514 | 17,420,992 |

#### 바. 소결론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5,308,834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308,8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별지